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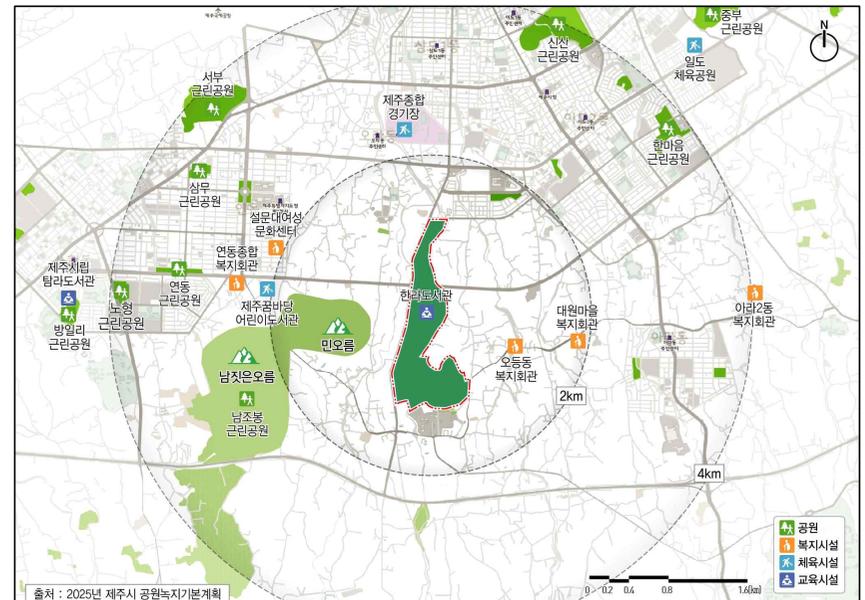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021. 07.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 계획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 계획면적 : 764,863㎡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계획수립권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승인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위치도



3. 주민 등 의견수렴

-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3.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가. 공고

- 제주시 공고 제2020-2016호(2020년 06월 26일)
- 관계행정기관 : 제주시
- 중앙신문 : 세계일보(2020년 06월 26일, 25면)
- 지방신문 : 제주매일(2020년 06월 26일, 2면)
- 관계행정기관 홈페이지(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주시 홈페이지)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년 06월 26일 ~ 2020년 07월 27일(22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제주시청(도시계획과), 오라동주민센터, 아라동주민센터, 이도2동주민센터

다.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0년 06월 26일 ~ 2020년 08월 03일(공람기간 완료 후 7일)
-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참고 1] 공고문

제주시 공고 제2020- 2016호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6.
제 주 시 장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가. 사업명 :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 나. 위치 :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 다. 면적 : 764,863㎡(공원 : 669,437㎡ 비공원 : 95,426㎡)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간 : 2020. 6. 26. ~ 2020. 7. 27.
- 나. 공람장소 :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오라동주민센터, 아라동주민센터, 이도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다. 관련서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등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가. 일시 : 2020년 7월 9일(목) 17시
- 나. 장소 : 제주시 애항운동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 우천시에도 주민설명회 진행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가. 기간 : 공람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나.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기재 제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등록
- 다.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대한 의견

5. 기타사항

-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064-728-3251~3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신문광고

<p>중앙지[세계일보 (2020년 06월 26일)] 25면</p> <p>세계일보 2020년 6월 26일 금요일</p> <p>오피니언 OPINION 25</p>	<p>지방지[제주매일 (2020년 06월 26일)] 2면</p> <p>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제주매일</p> <p>2 산복/산남이야기 제4947호</p>
<p>재주시 광고 제2020-2016호</p> <p>도시공원(오동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도시공원(오동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2020. 6.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가. 사업 명 : 도시공원(오동봉) 민간특례사업 나. 위치 : 제주시 오동동 1596번지 일원 다. 면 적 : 764,863㎡(공영 : 669,437㎡ 비공영 : 95,426㎡)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20. 6. 26. ~ 2020. 7. 27. 나. 공람장소 :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오라동주민센터, 이라동주민센터, 이도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관련서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등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0년 7월 9일(목) 17시 나. 장 소 : 제주시 예방운동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 우천시에도 주민설명회 진행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기간 : 공람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나.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기재 제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등록 다.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대한 의견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064-728-3251~3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재주시 광고 제2020-2016호</p> <p>도시공원(오동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도시공원(오동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2020. 6.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가. 사업 명 : 도시공원(오동봉) 민간특례사업 나. 위치 : 제주시 오동동 1596번지 일원 다. 면 적 : 764,863㎡(공영 : 669,437㎡ 비공영 : 95,426㎡)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20. 6. 26. ~ 2020. 7. 27. 나. 공람장소 :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오라동주민센터, 이라동주민센터, 이도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관련서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등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0년 7월 9일(목) 17시 나. 장 소 : 제주시 예방운동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 우천시에도 주민설명회 진행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기간 : 공람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나.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기재 제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등록 다.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대한 의견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064-728-3251~3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3] 정보통신망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Jeju City website's 'Information Disclosure' page. It features a search bar and a list of notices. A prominent notice is titled '도시공원(오동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Public Notice and Resident Explanation Meeting for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Odongbong Urban Park Private Special Project). The notice details the project location, public notice period (June 26 to July 27, 2020), and the location for public notice (Jeju City Office, Olla-dong and Ira-dong Resident Centers, and Ido2-dong Resident Center). It also mentions a public hearing on July 9, 2020, at the Jeju City Prevention Sports Complex. The notice is signed by the Jeju City Mayor.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homepage. It features a search bar and a list of project information. A search result is displayed for the '오동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Odongbong Neolinnongwon Private Special Project), showing the project name, location, and a 'Public Notice' button. The page also includes a navigation menu and a footer with contact information.

3.2 설명회

가.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20년 07월 09일(목) 17시
- 개최장소 : 제주시 애향운동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나. 개최 결과

구분	참석인원(인)	비고
○ 제주시 애향운동장	약 120	참석자명부 기재 인원기준

[참고 4]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사 업 자	주식회사 호반건설 컨소시엄					
개 최 장 소	제주시 애향운동장		개 최 일 시	2020. 07. 09		
연 번	성 명	주 소	연락처	발열유무/온도	서 명	
21	오			136.3		
22	현			136		
23	호			136.0		
24	이			136.4		
25	오			136.2		
26	오			136.2		
27	이			136.2		
28	이			136.1		
29	이			136.2		
30	오			136.0		
31	이			136.0		
32	이			136.0		
33	이			136.0		
34	이			136.0		
35	이			136.0		
36	이			136.0		
37	이			136.0		
38	이			136.0		
39	이			136.1		
40	이			136.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사 업 자	주식회사 호반건설 컨소시엄			
개 최 장 소	제주시 애항운동장	개 최 일 시	2020. 07. 09	
연 번	성 명	주 소	연락처	발달유무/온도 서 명
21	이			135.9
22	김			136.1
23	김			136.0
24	김			135.8
25	김			136.5
26	김			136.6
27	김			136.5
28	김			136.2
29	김			136.0
30	김			136.1
31	김			136.4
32	김			136.4
33	김			136.1
34	김			135.5
35	김			136.3
36	김			136.3
37	김			136.3
38	김			135.9
39	김			136.3
40	김			136.4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사 업 자	주식회사 호반건설 컨소시엄			
개 최 장 소	제주시 애항운동장	개 최 일 시	2020. 07. 09	
연 번	성 명	주 소	연락처	발달유무/온도 서 명
21	이			136.1
22	김			136.3
23	김			136.3
24	김			136.3
25	김			136.2
26	김			136.3
27	김			136.3
28	김			136.4
29	김			136.6
30	김			136.2
31	김			136.1
32	김			136.1
33	김			136.0
34	김			136.3
35	김			136.2
36	김			136.6
37	김			136.2
38	김			136.5
39	김			136.5
40	김			136.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사 업 자	주식회사 호반건설 컨소시엄			
개 최 장 소	제주시 애항운동장	개 최 일 시	2020. 07. 09	
연 번	성 명	주 소	연락처	발열유무/온도 서 명
21	이			136.0 B
22	홍			136.4 A
23	김			136.1 B
24	김			136.5 A
25	고			136 A
26	홍			136.2 B
27	서			136.4 B
28	김			136.3 A
29	김			136.7 A
30	김			136.3 B
31	김			136.3 B
32	서			136.4 B
33	김			136 B
34	김			136.2 B
35	김			136.3 B
36	김			136.4 B
37	김			136.5 B
38	김			136.1 B
39	김			136.1 B
40	김			136.2 B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사 업 자	주식회사 호반건설 컨소시엄			
개 최 장 소	제주시 애항운동장	개 최 일 시	2020. 07. 09	
연 번	성 명	주 소	연락처	발열유무/온도 서 명
21	홍			36.8 B
22	김			6.1 B
23	김			136.6 B
24	김			136.5 B
25	김			136.5 B
26	김			7.1 B
27	김			3.1 B
28	김			36.7 B
29	김			136.3 B
30	김			136.0 B
31	김			136.1 B
32	김			136.6 B
33	김			136.5 B
34	김			136.7 B
35	김			136.7 B
36	김			136.2 B
37	김			136.4 B
38				1
39				1
40				1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사업자	주식회사 호반건설 컨소시엄				
개최장소	제주시 애항운동장	개최일시	2020. 07. 09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발열유무/온도	서명
21	김			136.2	김
22	이			136.2	이
23	이			136.3	이
24	김			136.2	김
25	김			136.4	김
26	김			36.1	김
27	이			36.3	이
28	김			136.4	김
29	김			136.0	김
30	김			136.1	김
31	김			136.1	김
32	이			136.8	이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참고 5]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4.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주민설명회>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1	○ 하수처리계획의 경우 제주 하수처리장이 완전 포화상태인데 거기에 보내는 것은 저감방안이 됩니까?	[반영] · 본 계획의 목표연도를 제주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완료 후인 2025년 12월로 계획하여 운영시 발생 오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5 ~ '25년까지 제주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22만㎥/일로 늘리기 위하여 현대화 및 증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음
2	○ 토지구 보상문제 해결방안은?	[반영] · 토지보상문제는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짐.

<공람 시 제출된 환경 관련 주민의견>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 고
강00	○ 오동봉 근린공원사업에 시설분야로 파크골프 27홀을 개설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파크골프는 3대가 같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하여 오라동주민 및 전도민이 함께 운동하면 화합과 단합할 수 있습니다.	<미반영> ▷ 파크골프장(27홀) 개설은 3만㎡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금회 사업추진 여건상 파크골프장(27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
김00	○ 지주(본인)와 협의 없이 원래의 그린벨트 계획선이 변경됨에 따라 지주(본인)의 땅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또한 본 땅에 대한 수용가격에 대하여 공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된 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됨.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라 도시공원사업 부지 계획선이 설정되었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수용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조서 공람, 보상협의 회 구성,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 실시 등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구주들과 보상협의매수 및 토지구용 할 계획 임. ▷ 공청회 요건에는 미 충족됨에 따라 별도 공청회는 미진행 하였으나,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워크숍, 간담회, 관련인허가 의견청취 등)으로 지역주민과 시·도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음.	-
현00	○ 이 사업에서 반대한다.	<미반영> ▷ 본 계획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방치되고, 도시계획시설 일몰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방치된 공원시설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공원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 고
오라 동연 합청 년 회	○ 상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를 하였으나 내용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	-
	- 우선 제주시 오수처리장 증설 공사 또한 불확실(처리시설 마울과 미협의)하여 사업진행이 불확실 한 점	<반영>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상하수도 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연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음.	
	- 자연환경 최소화 방안 또한 기존 식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 하게 걸리는 어느 개발사업 이든 환경을 최소화 한다며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 다.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 말고 지장수목은 어디로 가이식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여 최종으로 어디로 이식을 할 것인가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영> ▷ 비공원시설내 기념목식재수는 오름주변으로 이식할 계획이며, 식생보전등급 3등급지역에 위치하는 수목은 사업지역 내 가 이식장(3곳)을 선정하여 가 이식후 조경수목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	
	- 교통처리계획도 또한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 지체가 항상 발생하는 도로인데 거기에 1400세대가 들어오고 아트센터, 콘서트홀 등이 들어오면 공연 또는 야외행사시에는 주차장 및 도로가 당연히 마비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도로 또한 중간 중간에 교차로를 2개소를 추가하여 3개소가 생길 예정인데 평상시 출근시간대에 아트센터 들어가는 차로(수량이 많지 않음)인하여 차들이 조금 정체가 됩니다. 근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교차로를 신설 해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차량정체는 뻥한 것입니다. 기존 정체에다 아트센터, 콘서트홀, 아파트주민, 공원이용객 등을 반영하면 현재 계획을 잡은 교통처리 계획도는 동떨어진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감속구간 가속구간을 주지만 구간별 길이가 70m전후로 이거는 형식상이지 교통처리 방안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계획입니다.	<반영> ▷ 사업지역 오남로 지역에 대하여 가감속차로 및 1km구간에 대하여 Set-Back하여 왕복4차로를 왕복5차로 및 가감속차로를 계획하였음. ▷ 또한, 사업지역 내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 공원이용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 고
오라 동연 합청 년 회	- 공원의 전반적인 시설 또한 주민들의 이용이 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방안으로 반영을 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공원 계획시 오라동주민 또는 타동주민과 협의 내지 설명을 해주면 좀 더 현실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유아숲 체험장을 공원 지구 시작점에 시설예정인데 바로위로 중앙중에서 이도초 방면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고립이 되어 어린이들의 체험장으로는 위험할 요소가 다분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차장도 6대로 이용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6대면 3식구 외 기타(산책시민)등 주차하면 만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일몰제 피하려고 아무 계산없이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한 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 ▷ 공원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및 동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차시설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고 충분한 주차대수를 도입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음. ▷ 또한, 앞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관련인허가 의견청취 등)으로 지역주민과 시·도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음.	
	- 아파트 부지를 보면 지하주차장 방식으로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는 걸로 보	<반영> ▷ 지하터파기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기존 지하3층에서 지하2층으로 계획하여 토공량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공사시 주변 하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토사유출 저감방안으로 임시침사지점 저류지를 비공원시설 내 2개소, 공원시설 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 또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 임시침사지 11개소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차량속도제한, 살수차량 운행 등 대기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강구하였음.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 고
오라 동 연 합 청 년 회	<p>- 오라동은 예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이 낙후되었던 동네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오라초 인근도로 및 연미마을 도로 등 많은 부분에 피해를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또한 오라동 관내에 있지만 오라동 주민을 위한 어떠한 배려 또한 없습니다. 이처럼 오라동민들은 항상 양보 또는 희생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번 민간 특례사업 또한 오라동에 많은 불편 및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개발은 오라동을 살기 불편한 동네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p> <p>- 최종적으로 당 사업계획은 최대 피해 주민인 오라동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일몰제에 떠밀려 급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 사업은 해서는 안되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를 하고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p>	<p><반영></p> <p>▷ 본 사업시행시 오라동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임.</p> <p>-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설명회, 관련인허가 의견청취 등)으로 지역주민과 시·도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음.</p>	-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 고
허00	<p>○ 공원조성사업시행시</p> <p>- 인근 생태계 안전을 위해 고지교의 전등을 철거하여 주시고</p> <p>- 사업부지 내 포함되는 하천가 부지를 일괄로 관리하며 하천내 스크린을 철거하여 하천 양쪽바닥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십시오.</p>	<p><미반영></p> <p>▷ 고지교 및 하천내 스크린은 관계기관(부서)들과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임.</p>	-
현00	<p>○ 공동주택 1단지는 연북로 북쪽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하겠으나 2단지는 현재 연북로와 신제주-제주대학교입구도로가 혼잡한 상태로 확장 또는 신설이 요구됨.</p> <p>○ 공원접근성도 문제되고 동서의 원활한 소통과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첨 약도와 같이 도로신설이 요구됨.</p>	<p><반영></p> <p>▷ 계획지역 오남로 지역에 대하여 가감속차로 및 1km구간에 대하여 Set-Back하여 왕복4차로를 왕복5차로로 계획하였으며, 공원접근성을 위하여 공원지역으로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여러군데 확보하였음.</p> <p>- 도로신설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외 지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p>	
(사)제 주 참 여 환 경 연 대	<p>○ 오동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데, 현재 제주도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오동봉 근린공원을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목적을 무시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p>	<p><부분반영></p> <p>▷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상 10년간('18-'27)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총 신규주택수요는 6.4~9.6천호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수요 전망결과 및 공공임대주택 수요 등을 종합할 때 연차별 신규주택수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요(연간 약 1천호)를 합산하여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안을 제시하면 연평균 약 7.4~10.6천호 내외, 10년간('18-'27) 약 74~106천호 내외의 주택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p> <p>▷ 또한 본 사업의 목표연도인 2025년에는 6.6~9.8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7,324호의 주택공급(준공기준)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경우, 본 사업을 통해 2025년 공급예정인 1,429호는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주택공급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p>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 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또한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오등봉 근린공원의 하수를 지금도 초과 상황인 제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초과인 상황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에 맞추어 계획하고 있는 것도 더 이상 이러한 무리한 계획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등봉 근린공원은 하천과 오름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설령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방선문길 등으로 제주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오름과 하천길은 이미 훌륭한 도시공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과 하천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생업의 터전을 뺏겨 헐 값에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평가를 주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곳의 가치와 환경을 평가할 때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p><부분반영></p> <p>▷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수도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하수의 외부인구 유입율(40%)을 감안할 때 하수처리장의 부하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p> <p>▷ 본 사업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시 질·상대보전지역인 오름 및 하천을 제외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석 되었으며, 사업지역 중 하천, 도로 및 한라도서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유지로 공공목적의 이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p> <p>▷ 본 사업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민간사업자가 70%이상 공원 조성 및 기부채납, 30%미만 수익사업 허용)으로 공원 및 문화공간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제주시의 새로운 주거·문화·관광거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임.</p>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 고
강00	○ 해당 사업지(오등봉공원)의 주변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의 자연 친화적인 외관특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나은 경관을 위한 입면분할창호, 혹은 유리난간을 이용한 외관특화를 통해 기존 철난간으로 인한 경관 저하의 저감이 필요합니다.	<p><반영></p> <p>▷ 주변의 자연환경과 공원시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이 훼손되지 않는 조화로운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위해 도시경관 통경축 및 바람길을 최대한 확보하여 녹지자연축을 연결할 계획이며,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제주의 특색을 갖춘 상징성 디자인을 도입할 계획임.</p>	
	○ 위와 연관지어 해당 사업지의 주변은 녹지지역으로써, 기존 경관조명의 수가 적은 지역입니다. 이를 고려해 공동주택 최상층의 경관조명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반영></p> <p>▷ 도시공원환경과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저감하고자, 공동주택 내 조명시설은 최소화할 계획임.</p>	
	○ 사업 특성상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간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공원시설의 조경시설은 가급적 공원시설과 조화가 되도록 시공하고, 비공원시설은 마치 공원과 하나가 되듯 외부인에게 개방된 형태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공원시설 내 도로 및 비상차로는 폭을 최대한 낮춰 녹지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p><반영></p> <p>▷ 본 사업은 공원 내 비공원시설이 입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과의 경계를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내 도로 및 비상차로는 외부공원시설과 내부조경시설과 최대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p>	
	○ 또한 최근 들리는 소문으로는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평당 21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제주도내 최상급지인 이도주공 재건축과 맞먹는 수준으로, 주변 인프라가 전무한 해당 공동주택에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분양가 산정 시 전술한 내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p><반영></p> <p>▷ 본 사업의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완료한 후, 최초 공모 사업제안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비 분석과 공동주택 디자인을 고려한 공사비 분석 등을 통해 관계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산정 검토 계획임.</p>	
	○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지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500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만큼 이에 맞춰 대중교통 확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p><반영></p> <p>▷ 사업지역 내 비공원시설 부지서측 오남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총 6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중교통 확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것임.</p>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 고	
박00	○ [사업의 적정성]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에는 거의 매일 적정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까지 제한되고 있는 마당에 1,400여 세대 아파트를 짓는 해당 사업은 제주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한 막개발이며, 바다 환경 오염은 물론 기존 제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수 저감 대책이 '제주하수처리장으로 하수 이송'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대책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절차를 위한 절차' 수준으로 보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한편, 제주시와 사업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주하수처리장이 포화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주민의 질문에 "하수처리장이 2025년에 증설 될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은 주민저항성이 큰 사업으로 2016년에도 제주하수처리장 오수 방류로 문제가 되자 제주도는 용량 4만 톤을 증설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처리장이 지어질지도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확보되지도 않은 기반 시설 용량을 운운하며 전략영향평가를 얼버무리는 것은 해당 평가의 취지를 깎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반시설연동제'만 보더라도, 기반시설의 용량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기반시설 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계획만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 환경 오염을 방관한 채, 사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사업자의 논리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해당사업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기반시설의 용량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반영>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와 하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하수도본부 의견에 따라 사업지역 내 중수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사업부지로의 외부 인구 유입율(40%)을 고려할 때 하수처리장의 부하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향후 제주하수처리장증설 지연시에는 비공원시설 입주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임.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 고	
박00	○ [입지의 타당성] 해당 부지는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생태자연도 및 절대보전지역에 따라 약 80%의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옴과 한천을 끼고 있는 곳으로, 해당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제주시민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며, 새들과 동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이구가 해제되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해 일부 대규모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남겨주고, 미분양 포화라는 제주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을 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그 지역에 1,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존재이유라 한다면, 해당 사업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목적이라고는, 민간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당 지역은 제주의 교통체중구간인 연북로를 끼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인데다가, 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를 끼고 비공원시설을 짓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만 해도 아트센터 앞 도로는 공원을 보러온 차들로 매우 혼잡합니다. 이런 상습혼잡지역에 아파트까지 짓는다니요?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차량 공회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의 상황만 계산해 보아도, 제주의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당시 사업자와 제주시는 "추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영뚱한 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추후 절차에서 교통문제를 논의 하겠다고요? 그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왜 하는 것이죠? 주민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해당 저감방안에 대한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과 논의를 배제한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그 절차의 이유를 잃어버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당해 사업으로 손상되는 도심의 나무만 6,000여 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나무들은 20-30년 된 거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이식하고 손상하는 것이 과연 공원을 지키는 것일까요? 해당 나무들을 이식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할만 못합니다. 제주도와 제주시가 진정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고, 공원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해당 부지를 온전히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분반영> 사업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절대보전지역인 한천과 오드싱오름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됨. - 개발가능면적 : 약 53.7% 본 사업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민간사업자가 70%이상 공원 조성 및 기부채납, 30%미만 수익사업 허용)으로 공원 및 문화공간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제주시의 새로운 주거·문화·관광거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임. 공원시설인 아트센터 인근에 데크주차장을 계획하여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였으며, 오남로변으로는 SET-BACK하여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확대하고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영향을 최소화 하였음. 시설배치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원시설 내 시설지는 현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차장, 화장실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현존식생을 유지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여 훼손수목량을 최소화하였으며, 훼손수목 중 10%이상을 이식수목으로 계획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였음.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방치되고, 도시계획시설 일몰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방치된 공원시설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공원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 동연합	<p>○ 오등봉 공원은 제주도내 244곳의 도시공원 중에서도 자연환경이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주시 도심에 있어서 이 정도로 자연환경이 풍부한 도시공원은 유일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인 오드싱오름(오등봉)과 한천을 끼고 있고 많은 제주도민이 산책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한라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오등봉공원의 핵심인 한천은 제주 시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의 최상류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오등봉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한천과 최대한 근접하여 14층 고층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때문에 한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영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한 의견을 제출합니다.</p>	<p><부분반영></p> <p>▷ 본 사업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민간사업자가 70%이상 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30%미만 수익사업 허용)으로 공원 및 문화공간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제주시의 새로운 주거·문화·관광거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p> <p>▷ 이에 따라, 기획손지 중심으로 비공원시설(공동주택 1,2단지)을 계획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원시설로 계획하여 제주시민(도민) 모두가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p> <p>▷ 생태계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4계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법정보호종(6종)에 대해서는 저감방안을 강구하였음.</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 동연합	<p>○ 제주 주택 수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주택공급 계획</p> <p>- 제주 이주 열풍으로 200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 몇 년 사이 확연히 줄고 있음. 더 나아가 순 유입이 줄고 인구 유출이 늘면서 인구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패턴이 되었음.</p> <p>- 이처럼 인구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치솟던 땅값도 떨어졌음.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제주지역의 미분양주택은 2014-2016년에 124-271가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7년부터 급증해 2017년 1271가구, 2013년 말엔 1295가구로 역대 최고에 이르렀음.</p> <p>- 주택의 수요자인 인구 대비 미분양주택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미분양주택의 수는 0.9호임. 제주는 1.6호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보다도 많고 지자체 중에서도 5번째로 미분양주택이 많음.</p> <p>- 즉,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미분양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공급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 그런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제9장. 계획의 적정성,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분석’에서 “제주도의 인구 및 가구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중략… 10년간(2018~2027년) 제주도의 연평균 총 신규주택 수요는 6.4~9.6천 호로 전망되어 주택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음.</p> <p>- 그런데 이는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인구증가 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잘못된 전제임. 이런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6만 호~9만 호의 신규주택 수요를 내세우며 주택공급 논리를 합리화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부터 잘못된 것임.</p> <p>- 잘못된 근거에 바탕을 둔 자료로 행정당국에서 중부공원과 동부공원을 포함해서 오등봉공원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 생태계훼손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음.</p>	<p><반영></p> <p>▷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 ~2027)」상 10년간('18-'27)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총 신규주택수요는 6.4~9.6천호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수요 전망결과 및 공공임대주택 소요 등을 종합할 때 연차별 신규주택 수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소요(연간 약 1천호)를 합산하여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안을 제시하면 연평균 약 7.4~10.6천호 내외, 10년간('18-'27) 약 74~106천호 내외의 주택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p> <p>▷ 또한 본 사업의 목표연도인 2025년에는 6.6~9.8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7,324호의 주택공급(준공기준)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경우, 본 사업을 통해 2025년 공급예정인 1,429호는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주택공급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 동연합	<p>○ 조사 기간의 문제</p> <p>-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사 기간은 4계절도 아닌 특정 시기인 5월 16일~5월 19일이며 단 4일간에 불과함. 이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를 다시 다룬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사업부지에 비해 상당히 짧은 조사 기간임. 특히 많은 생물이 출현하는 여름철을 제외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p> <p>- 사업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첫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부지의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다면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여 결국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큼.</p>	<p><반영></p> <p>▷ 생태계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4계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법정보호종(6종)에 대해서는 저감방안을 강구하였음.</p>	
	<p>○ 조사의 공간적 범위와 문제</p> <p>-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통상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사 공간 범위는 장축(타원 안의 가장 긴 지름)의 2배 이상으로 설정함. 그렇다면 이번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경계지로부터 최소 3km~4km이상 되어야 함.</p> <p>- 그럼에도 이번 평가서에서 식물상 조사는 사업경계로부터 100m, 동물상 조사는 사업경계로부터 500m에 불과함. 이는 사업부지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협소한 면적임. 특히, 사업부지는 한천의 종류로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p>	<p><반영></p> <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에 따르면 면사업의 경우 식물상은 경계에서 100m, 동물상의 경우 100~300m 범위를 조사범위로 제시하고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규정”에 따라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제시하였으나, 평가협의회 심의시 기준보다 강화된 조사범위를 확정하여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확정하였음.</p> <p>-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식물상은 경계에서 100m, 동물상(조류제외)은 500m, 조류의 경우 1km를 조사범위로 확정하여 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식물상의 경우 민오름지역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함.</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 동연합	<p>○ 천연기념물 ‘원앙’ 누락</p> <p>- 과거 문헌 자료에도 원앙은 1998년 2월 168개체, 1989년 141개체, 2000년 2월 700개체, 2001년 2월 400개체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래 개체수가 높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p> <p>-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이 있는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 원앙이 제주도섬에 집단으로 도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임. 그만큼 오등봉공원의 생태계가 훌륭하다는 것이고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p> <p>-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현지 조사에서도 오등봉공원 내 한천 전 구간에 걸쳐 수많은 원앙의 배설물이 있음을 확인했고 육안으로만 5마리를 확인했음.</p> <p>-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서 한천 내 대부분의 소(沼)에서 원앙의 배설물을 발견한 것을 보면 이곳이 원앙떼가 집단으로 도래하고 있는 곳임을 유추할 수 있음. 이곳은 대규모의 소가 많고 원앙이 좋아하는 도토리도 많고 외부로부터 은폐된 공간이 많아 원앙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좋은 공간임.</p> <p>- 그런데 수많은 원앙의 배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재한 것은 평가서의 부실을 넘어 의도적인 왜곡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p>	<p><반영></p> <p>▷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4계절에 걸쳐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으로 원앙을 포함하여 총 6종으로 관찰됨.</p> <p>- 겨울철 조사시 관찰된 원앙을 포함하여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저감방안을 강구하였음.</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 동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종에 대한 허술한 대책 - 평가서에는 현지 조사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인 벌매(2급), 팔색조(2급, 천연기념물 204호), 긴꼬리딱새(2급)가 발견되었다고 나와 있음. 벌매의 경우 이동 중인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의 경우 한천의 지형과 생태계로 볼 때 번식장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그러나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이 전혀 없음. - 중요한 것은 멸종위기종의 희귀한 새들이 이곳을 서식지로 삼고 있을 정도로 생태계가 훌륭하다는 것임. 그리고 대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중요한 조류가 서식 못 할 곳으로 변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조사시 벌매의 경우 이동중인 개체를 확인하였으며, 팔색조 및 긴꼬리딱새는 하천변에서 울음소리로 확인됨. ▷ 팔색조 및 긴꼬리딱새는 하천변에서 울음소리로 관찰됨에 따라 하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변 훼손을 최소화하고 하천으로의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오탐방지막 설치 등의 수질 저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공원시설 경계변으로 가설방음판넬 등을 설치할 것임. 또한,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할 것임.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 동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보전지역 한천의 생태계 평가 절하와 피해 대책 미흡 - 제주도의 하천은 육지부의 강과는 달리 건천이면서 기암절벽과 소(沼)들이 어우러진 독특한 지질학적,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음. 그럼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제주 하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육지부의 하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절하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 오등봉공원 안 한천에도 여러 개의 대형 소가 분포해 있음.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소의 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음. - 한천 안의 대규모 소는 제주도룡농, 북방산개구리, 대륙유혈목이 등 양서파충류와 수서곤충의 서식지이면서 원앙이 대규모로 날아오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임. - 그런데 평가서에서는 “공사에 따른 토사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탁도 증가와 여러 무기물의 하천유입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그러나, 본 조사대상 수계는 다양한 육수 동물상의 서식지로 매우 부적합하였다. 중략…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비교적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기술하고 있음. - 즉,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하여 제주도 고유의 하천 습지에 대한 평가 절하와 더불어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조사결과 제주도룡농, 청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등이 관찰되고 있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시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오탐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하천으로의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하천을 보호함으로써 양서류 및 파충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동연합	<p>○ 제주도 도심 녹지 축의 단절과 도시 숲 개발로 인한 영향 간과</p> <p>-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이지만 개발로 인한 생태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음. 사업부지 특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는 나대지 이외에도 숲이 형성된 지역임. 곰솔군락이 우점하고 있고 졸참나무, 종가시나무 등 상록활엽수 그리고 상수리나무, 울벚나무 등 활엽수군락도 계속 확장되고 있음.</p> <p>- 현재 제주시의 도심은 남쪽 방향(한라산 방향)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도심은 확장되지만 녹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그렇기에 도심 확장이 계속될수록 도시공원의 존재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음.</p> <p>- 오등봉공원 일대도 머지않은 미래에 도시가 확장될 지역으로서 오등봉공원은 계란의 노른자처럼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음. 그러므로 한천과 오등봉 그리고 도시 숲을 포함하는 오등봉공원은 제주도 도심 녹지 축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p> <p>- 그럼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단순하게 사업부지의 숲에 대한 식생이 생태등급도가 낮은 이유로 개발에는 문제가 없음을 기술하고 있음. 사업부지의 숲은 도시 숲의 하나로서 도심의 녹지 축으로서의 미래 가치도 고려해야 함.</p>	<p><반영></p> <p>▷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기획손 지역 및 경작지 지역 위주의 시설물 배치와 친환경적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생태축 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p> <p>▷ 사업지역 오남로 방면으로 남북측으로 생태축연결을 위하여 가로변식재를 계획하여 생태축연결을 확보하였음.</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동연합	<p>○ 경관 파괴에 대한 대책 부실</p> <p>- 오름(독립화산체)은 제주도의 경관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그래서 제주도 당국도 도 조례에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오름의 경계로부터 1.2km범위에서 건축물 높이가 오름 비고의 3/10을 초과하는 건축물’ 조항을 넣은 것임.</p> <p>-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 층고 3m로 계산하면 오등봉공원 아파트는 14층이기 때문에 높이가 최소 40m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제한 높이 3/10을 훨씬 초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등봉의 비고(56m)에 거의 육박하는 것임.</p> <p>- 그러므로 아파트단지 건설이 완료되면 오등봉의 경관을 증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음. 더욱이 계획지구 반경 1.2km이내에는 오등봉 뿐만 아니라 민오름, 남짓은오름, 오구시오름 등이 있어 기존의 제주 도심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게 됨.</p> <p>-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3/10제한 규정에서 도시지역은 제외한다는 점을 들어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음.</p>	<p><반영></p> <p>▷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오름비고 3/10 높이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경관보전등급 1, 2등급의 기생화산일 경우로 도시지역 내인 본 계획지구의 오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비공원시설 배치시 주변오름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영향을 최소화 하였음.</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동연합	<p>○ 하수처리 문제 대책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어긋날 가능성이 큰 하수처리 대책 -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현재 대부분 환경기초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제주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도내 전체 하수처리장 8곳이 모두 한 차레 이상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했다가 적발돼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받았음. 그중 오등봉공원에 계획되는 아파트 단지의 하수가 연결되는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은 지난 3년간 2번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음. - 이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제주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현재 13만t에서 9만t늘려 22만t으로 확충하는 계획이지만 오등봉공원 아파트건설 계획도 2025년까지 준공예정임.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상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오등봉공원 아파트가 기존 계획대로 준공되면 하수처리 증설 시점과 어긋나게 됨. -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수 발생량도 1일 최대 1,971t으로 추산하고 있어서 만약 오등봉공원 준공 시기와 하수처리 증설 시점이 어긋나면 하수처리장의 과부하로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할 것임. 	<p><반영></p> <p>▷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와 하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하수도본부 의견에 따라 사업지역 내 중수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수의 외부 인구 유입율(40%)을 감안할 때 하수처리장의 부하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동연합	<p>○ 공사 시 오수 발생에 대한 대책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에서는 오수 발생을 현장사무실 운영에 따른 오수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부지는 한천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흙탕물이 한천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음. - 이로 인한 한천 생태계의 영향이 막대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p><반영></p> <p>▷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는 모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계획이며,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한천으로의 토사유입을 방지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것임.</p>	
	<p>○ 생활 쓰레기 문제 대책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증하는 인구와 관광객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주도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임. 현재 제주시 기존 매립장 3곳은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고 서귀포시도 내년 상반기 매립종료가 예상됨. - 이렇다 보니 제주시 동북매립장으로 집중적으로 매립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북매립장도 제주 전 권역의 매립 쓰레기를 소화할 경우 매립종료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인구가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음. 	<p><반영></p> <p>▷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할 계획으로 폐기물발생량을 최소화 할 계획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운 동연합	<p>○ 도시공원의 사유화로 인한 공공복리 침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곳은 인근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오라올레길이 있는 곳임. 주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고 한라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도 공부하다가 휴식을 즐기는 곳임. - 하지만 오라올레길에서 몇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서 오라올레길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뒷마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이 올레길을 뒷마당처럼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공원이 가졌던 여러 조건이 퇴색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이러한 제주도민들이 누려왔던 공공복리 침해에 대한 대책은 평가서에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p>▷ 본 사업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민간사업자가 70%이상 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30%미만 수익사업 허용)으로 공원 및 문화공간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제주시의 새로운 주거·문화·관광거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공원시설(공동주택 1,2단지) 거주자 및 인근 거주자만이 아닌 제주시민(도민) 모두가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원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음.</p> <p>- 공원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천 동서 연결을 위한 보행교 3개소 설치, 공원순환산책로 등의 도입으로 공원 접근성 및 도시와의 연계성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공원이용객의 원활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 주요부에 옥외주차장 및 화장실 등을 분산배치하여 충분한 편의시설 면적을 확보하였음.</p>	